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이외에도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촘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설계를 통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사후점검” 등의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등의 작성 및 반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사후점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57 FAX : 02)3396-9055
- E-mail : queen@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를 “완공 전에는 적합성 확인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 이라 함은 준공 후 생활환경 인증이 누락되거나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생활환경 인증 누락,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성 확인” 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주 등에게 지도·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받아야한다” 를 “받아야 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적합여부” 를 “적합 여부” 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점검” 을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을 “(적합성 확인서 등의 작성 및 반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등을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으로서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적합성 확인(별지 제1호서식)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사전점검으로서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의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을 “(사후점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 소재 공공건축물 및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공공건축물이 신축 및 증·개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구에서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

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건축명	
대지위치	
대지면적	지역·지구
건축면적	층수
당해 연면적	용도
구조	공사종별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대상		설치		미설치	특이사항
	의무	권장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종합의견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사후점검) 결과보고서				
도로, 공원 등	소재지			
	명 칭			
	시설내용			
	시설규모			
시 설 주	성 명		전화번호	
점검일시				
점검항목				
점검결과				
특기사항				
점검자 종합의견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서명(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편의시설점검결과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 완공 전에는 적합성 확인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 ----- ----- ----- -----.</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p>

현행	개정안
<p>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사전점검 대상시설) ① 사전점</p>	<p>한다)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p> <p>2. “사후점검”이라 함은 준공 후 생활환경 인증이 누락되거나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생활환경 인증 누락,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 변경,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p> <p>3. “적합성 확인”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주 등에게 지도·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사전점검 대상시설) ① -----</p>

현행	개정안
<p>검 대상시설의 범위는 법 제7조에 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 무가 있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 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 검을 <u>받아야한다</u>.</p>	<p>----- ----- ----- ----- ----- <u>받아야 한다</u>.</p>
<p>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 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u>적합여부</u>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점 검해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 ----- <u>적합 여 부</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편의 시설의 <u>사전점검</u>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p> <p>1. ~ 3. (생략)</p>	<p>제6조(구청장의 책무) ----- ---- <u>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u>---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0조(<u>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u>)</p> <p>① <u>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 결 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 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u></p>	<p>제10조(<u>적합성 확인서 등의 작성 및 반영</u>) ① <u>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 합성 확인서 등을 참조하여 편의 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 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u>점검요원은 사전점검으로서 적 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한 요원</u></p>

현행	개정안
<p><u>해야 한다.</u></p>	<p><u>전원의 서명을 받은 적합성 확인</u></p>
<p><u><신 설></u></p>	<p><u>서(별지 제1호서식) 및 결과보고서</u></p>
<p><u><신 설></u></p>	<p><u>(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u></p>
<p><u><신 설></u></p>	<p><u>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③ 구청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u></p>
<p><u><신 설></u></p>	<p><u>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u></p>
<p><u><신 설></u></p>	<p><u>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p>
<p><u>제11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구</u></p>	<p><u>④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u></p>
<p><u>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u></p>	<p><u>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u></p>
<p><u>에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u></p>	<p><u>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u></p>
<p><u>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u></p>	<p><u>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u>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u></p>	<p><u>⑤ 구청장은 사전점검으로서 적합</u></p>
<p><u>성 확인 및 사후점검의 결과를 반</u></p>	<p><u>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u></p>
<p><u>치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u></p>	<p><u>는 경우 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u></p>
<p><u>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u></p>	<p><u>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u></p>
<p><u>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u>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u>제11조(사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사</u></p>	<p><u>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서울특별</u></p>
<p><u>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 소재</u></p>	<p><u>공공건축물 및 시설에 대해 장애</u></p>
<p><u>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u></p>	<p><u>용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u>야 한다.</u></p> <p><u>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p>	<p><u>극 안내하여야 한다.</u></p> <p><u>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공공건축물이 신축 및 증·개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여야 한다.</u></p> <p><u>③ 구에서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u></p> <p><u>제12조(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u></p> <p><u>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0.27 조례 제 8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사전점검 대상시설) ① 사전점검 대상시설의 범위는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한다.

②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시설주관기관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사전점검요원의 자격)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은 2년제 대학 이상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건축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제7조(시설주의 의무) ① 건축물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련된 업무를 제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의 처리지연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건축물 시설주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나 비용 청구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업무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4.>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 관련)

대상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대상 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